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24

발의연월일: 2021. 2. 4.

발 의 자:김경만·김성주·김주영

민형배 · 신정훈 · 유정주

유준병·이수진·정필모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수·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처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업 간 자율조정 및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 개시 전 조사 대상기업이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조치를 아니하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의5신설).
- 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와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6 및 제28조의7 신설).
- 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8 신설).
- 마.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과 민사상 시효 중단과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9 신설).
- 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와 조정조서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55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7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55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를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8조의4(종전의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7조제7항"을 "제28조의2"로 한다.

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조사 개시 전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을 아니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 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

우

-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 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 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 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 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 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와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 의뢰는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2.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 익이 없는 경우
-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 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⑧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⑨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조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3 중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 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제43조제3항제2호 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법률 제1755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거래행위 개선) ① ~ ⑥ (생 략)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 | <삭 제> 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 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27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

개 정 아

법률 제1755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7조(수탁 · 위탁기업 간 불공 | 제27조(수탁 · 위탁기업 간 불공 정거래행위 개선) ① ~ ⑥ (현 행과 같음)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7555호 대ㆍ중소기업 법률 제1755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 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27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

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7항 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 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 2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개시 전 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 우에는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 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 요구등을 하기 전 조사 대상기 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 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제28조의2---

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 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 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 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위 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 다.

-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 항
-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

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3.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업무 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 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
-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 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쟁조 정협의회를 대표한다.
-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있는 경우
-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 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에 보쟁조정협의회에 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 명한다.
- 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 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착·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 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 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거 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 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 피할 수 있다.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 제28소의9(문쟁소성협의회 소성 신청 등) ①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와 관련된 분쟁의 당사 자는 서면으로 분쟁조정협의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 조에 따른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 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 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 의뢰는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 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 행한다.
-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

서를 작성한 때

-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 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 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 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 한다.
-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
 - ② 문생조성엽의의는 문생당사 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 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u>조정</u> 신청을 한 경우
- 2.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수
-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 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 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 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 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 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 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⑧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 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 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⑨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 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 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조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 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4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 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 에 해당하는-----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 2. <u>제28조의2</u>에 따른 교육명령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 3. (생략)
- ④ (생 략)

	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4]	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u>제28조의4</u>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